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0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 박홍배·정진욱·민병덕

이광희 • 염태영 • 김재원

김정호 • 문진석 • 조승래

서미화 • 전용기 • 박정현

홍기원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현행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위임 대상이 되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나, 소속기관의 명칭은 대통령령(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는 소속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 게 되는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근거를 둔 환경부 산하기 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 나.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소속 기관명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함(안 제48조제1항).
- 다. 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법률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 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을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위해성평가) ①・② (생	제24조(위해성평가)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
	<u>을 수 있다.</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u>국립환경과학원</u>	소속 기관의 장에
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	<u>게</u>
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	
<u>게</u>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②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	
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	
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법」에 따른 <u>한국환경공단 및</u>	한국환경공단, 「환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u> 경보전원 및</u>
있다.	

•